여성노동1.

98년 13차 총여학생회 집행부 회의 안건지 (98년 5월 13일)

1. 보고 사항

1)중앙운영위원회 보고

2)각 국별 보고

2. 논의 사항

1)예산안에 관하여

2)IMF와 관련하여-여성과 노동 토론 제안

3)다음 주 미인 대회 문화제 관련

3. 공지 사항

1)5월 17일 총여학생회 10주기 언니들이랑 밥먹기-제주도 통갈비에서 늦은 6시

2)5월 14일 성폭력 자치규약 공청회.

4. 다음주에는...

1)미인대회 일정이 있지요.. 모두들 협조를.

2) Choi의 생일

3) 장원 출타

여성의 일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현재,
여태까지 여성들이 이루어낸 것들을 지키고
우리의 미래와 꿈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촉구합니다.

받는 괴로움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집행부
보내는 역겨움 : 쵸이
날짜 : 98. 5. 13

5월 10일 예정되어 있던 '한총련에 대한 입장 정리'는 5월 5일 집행부 회의에서 유보하기로 했다. 유보한다기 보다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무작정 토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 속에, 보다 적절한 접근방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 몇몇 안되는 집부들이 동의한 부분은, 주제가 너무나도 거대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총련 자체의 옳고 그름이라기 보다 현재 학생운동 진영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성주의적 시각과 방식을 현재 학생운동 위기에 대한 대안적 질서로 제시하는 것까지였다. 그러나 한총련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경우, 우리가 의도했던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성의 문제, 우리 일상의 문제와 맞물리는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논의의 과정 속에서 학생운동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얘기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경제 위기와 여성노동권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으면 한다. 이것은 학운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이고 이 속에서 학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감이 안잡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일상 속까지 스며들고 있다.
여성운동 내에서 "노동 문제 = 운동권들의 주제 =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는 등식이 자리잡고 있는듯하다. 그러면서 노동문제를 회피하거나 무관심의 대상을 치부해버리는 경향. 그러나 여성배제적 노동운동은 학생 사회에서 방법론적인 오류였지 절대 노동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각에서 보고 우리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여성운동이 만들어왔던 성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고, 앞으로의 여성운동을 지켜내기 위함(강력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적 공세 속에서 여성운동이 설 자리가 축소될 것이 예상된다)이고 우리 각각의 1-2년 후 미래를 잃지 않기 위해서이다.

다음을 제안합니다.
1. 여성노동권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시작할 것
2.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 여성운동 간의 연대를 형성하고 활동을 전개할 것

별첨 문서
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안〕 (민노총)
②〔고용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민노총)
③조순경 교수 특강 강의록
④이화여대 대학원 짜투리의 제안서
⑤'살맛나는 세상' 제안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안 (98.4.29)
[출　　처]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 노동부는 4월29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기준등 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당시의 노동부안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노동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노동계등의 의견을 합리적인 선에서 수 용, 당초안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붙임1 : 수정내용 및 사유 참조)
* 노동부는 5월18일까지 관련단체등 국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확 정 5월하순경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다.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o 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소분류 내지 세세분류기준에 의한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비서·타자원의 업무등 27개 업무로 함(붙임2 : 근로 자파견대상업무 참조)
※대상업무선정기준
- 전무지식·기술 및 경험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 현실적으로 파견근로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파견근로에 적합한 업무중 - 정규근로자의 고용대체 효과가 크지 않은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
ILO의 직업분류기준을 토대로 모든 직업 및 해당업무를 기술(대분류 10, 중분류 28, 소분류 116, 세분류 397, 세세분류 1,567)
한편,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 우에는 위 27개 업무외에도 근로자파견이 가능
- 다만,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의료업무와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의 운전 업무는 다중의 안전을 위해 절대금지업무에 포함
※절대금지업무
- 법에서 규정 : 항만하역업무, 건설현장업무등 4개업무　- 시행령에서 규정 : 의료업무, 대중교통수단의 운전업무등 4개업무

□ 허가기준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일정수 준이상의 자본 및 시설을 갖춘 자에 허가
- 1억원이상의 자본금
-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후 파견근로자 사용제한기간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 후 2년간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고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 기업이 경영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2년이내에 신규채용 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붙임2]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213. 컴퓨터전문가 업무
241. 사업전문가 업무
243.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전문가 업무
2444.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업무
31158. 냉난방기 기술공의 업무중 관리 보수에 관한 업무　3118. 도안사 업무
3121. 컴퓨터보조원 업무
3131. 사진사 및 녹화 녹음장비조작원의 보조업무
3132. 방송 및 전기통신장비 조작원의 보조업무
32232. 공중보건 영양사 업무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 업무
3431. 관리비서 및 관련 준전문가 업무
34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업무
411. 자료입력기 조작원(4113)과 계산기조작원(4114)의 업무를 제외한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업무

414. 도서, 우편 및 관련사무원 업무
4223. 전화교환 사무원 업무. 다만,전화교환사무원의 업무가 당해사업의 핵심업무인 경우는 제외
5113. 여행안내요원 업무
5122. 조리사 업무. 다만,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조리사업무는 제외.
5131. 보모의 업무
51321. 간병인 업무. 다만,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제외.
5133. 가정 개인보호 근로자의 업무
52204. 주유원 업무
832. 자동차 운전원 업무. 다만, 제3항 제4호의 업무는 제외.
91132. 전화외판원 업무
91321. 건물청소원 업무
91521. 수위 업무
91524. 경비원 업무

[고용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1998.04.22)] 中 발췌

2. 고용문제, 왜 발생하는가?

1) 무한경쟁의 자본주의 - 고용문제는 필연적 !
① 고용문제는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생존 의 문제다.
그러나 자본가에게는 생산을 위한 비용의 문제다. 때문에 자본가는 보다 많 은 이윤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얼마든지 해고시킬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기계와 컴퓨터, 정보통신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사 회에서 고용문제란 필연적이다.
② 현재 세계 자본주의는 과잉자본, 과잉생산으로 인한 무한경쟁시대에 접 어들었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자본을 운영해야 하며, 이 를 위해 필요에 따라 노동력을 쓰고 또 버릴 수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시도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노조의 약화, 공기업 민영화, 고용불안 및 실업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③ 이러한 세계적 추세속에서 한국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도입해왔 다. 김영삼 정부의 규제완화, 민영화, 96년 말 노동법 날치기 통과, 그리고 기업차원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신경영전략과 신인사제도 등이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고용불안
①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된 경제구조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속에서 "아시아의 용"이라고 칭할 만큼 높은 성장을 구가해왔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 금, 노동조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이러한 양극화된 경제구조는 부문간 노동 력의 이동 및 재배치가 어려운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정착시켰다.
② 대기업·중소기업의 연쇄부도, 노동자의 대량실업 사태 이미 80년대 후반의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휴 폐업, 부도에 몰리고, 이로인해 노동자의 고용문제는 심각해져왔다. 특히 97년 상반기부터 한보를 시작으로 진행된 대기업의 부도사태는, 재벌 계열 사의 부도가 그룹 전체의 연쇄 부도로 확산되고 그 여파로 광범위한 중소하 청업체의 부도, 나아가 노동자의 대량실업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져왔다.
3) IMF 체제는 고용, 실업 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① 97년 11월 재벌중심의 왜곡된 경제구조와 경제관료의 무능력 등 한국경 제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안고, 세계적 차원의 무한경쟁체제로 편입 하기 위해 급속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OECD에 가입하는 등 대내외적 문제가 중첩되면서 한국은 급속한 외환위기에 몰리게 되고 결국은 IMF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② IMF 체제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국민생활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IMF가 요구하는 재정긴축, 저성장, 노동시장의 유연화, M&A허용 등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한국 노동자의 고용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③ IMF의 재정긴축과 저성장 및 고금리 정책
IMF의 긴축 및 저성장 정책은 결국 실물 경기 하락과 내수시장의 침체로, 고금리 정책은 극심한 돈가뭄에 흑자기

업조차 도산으로 몰아, 수많은 노동자들을 줄줄이 길거리로 내모는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④ 시장개방 요구와 M&A허용
외국의 초국적 자본이 한국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인수합병으로 인한 정리 해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현실이다.
⑤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각 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하여 노동자의 실질임금 은 삭감하고 있으나,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인상, 세금인상으로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나 노동자와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하고 힘겨워지고 있다.

▶쵸이가 몇 마디 덧붙인다면.....

정리해고가 여성 우선 순위로 실행되고 있듯이, 파견근로제 역시 실행되면 여성에게 일차적인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다. 파견근로제 입법예고안에 붙혀진 파견근로의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문직 사무직 등의 대다수의 여성이 투입된 산업에 적용된다. 파견근로제가 문제인 것은, 고용자와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고용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계약에는 임금이나 노동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고용자와 사용자가 분리될 경우, 고용자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는 고용이나 해고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다. 즉, 회사에서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을 때, 사용자도 고용자도 그 어떠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론, 전반적으로 노조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조사에 의하면 약 97%의 여대생들은 결혼과 상관없이 졸업 후에 직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다수가 전문직 내지는 사무직으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직을 한다면 - 물론 이것조차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 파견근로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노동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화(쉬운 말로 하면, 여성을 집안에 가둬 놓기) - 이것은 대중매체로 가능하고 또한 실업대책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 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리해고나 파견근로화는 여성노동권이 이제는 절대적으로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IMF 체제가 시간적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IMF' 자체가 절대 악이라기 보다 사실상 전지구적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기 위해 어쩌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이기 때문이다.

수신: 각 학교 여성운동가들
송신: 짜투리 (김이승현: 015-8428-1120)
일자: 1998. 5. 9. 토요일

<Wanted>
IMF시대를 정면공격할 대학내 여성운동가들!

주/ 여기서 여성노동자란, 현재 노동을 하는 여성들 뿐 아니라 앞으로 노동할 예비여성노동자를 모두 포함하는 성+경제 계급의 개념입니다. 이는 단지 공적 공간의 노동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집에서건 밖에서건 일하거나 일할 모든 여성을 뜻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이시기를 6.25 이후 민족 최대의 수난기라고 합니다. 통계수치상(물론 저는 이를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완전고용의 상황에 있던 이 나라는 단 반년만에 고실업률의 맹위를 떨치는 국가로 변신했으며, 이런 대책없는 상황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라고들 하더군요. 어쨌든 각 언론들은 쉴새없이 이 경제망국에 대해 떠들고 있으며 정부도 재계도 노동계도 모두 쉴새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 하지만...우린 여기서도 여성문제는 '보이지 않게' 가려진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대생은 IMF의 1차 피해군으로 아예 취직되어보지도 못한 판국이며, 취업했던 여성노동자들은 가족의 생계부양자도 아니지 않느냐면서(사실은 덜 위협적이고 만만해서?!) 근기법,고평법에 명시되어 있는 '확실한 부당해고'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당국 역시 여성들이 짤리면 그녀들은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통계수치화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정치적 목적 하에 여성들의 부당해고 등 여성노동'권' 파괴를 *절대*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여성들을 희생양의 희생양으로 위치지우면서, 한편으론 '가장'이데올로기가 짜증나게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갖 실업대책부터 융출자금까지 모든 것이 '(남성)가장'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마치 실업자의 문제는 '우리 아버지'들만의 문제인양 보여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실업자 하면 고개숙인 남성 이미지가 먼너 떠오릅니다. 당연하지요...그렇게 담론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들의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가운데 여성노동자의 생존권,노동권은 전혀 '문제시'되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들은 한편으론 우선해고대상이며, 한편으론 실직할 혹은 실직 가능한 남성들을 위해 찍소리말고 감정서비스 노동을 제공해야 하며, 남편이 실직한 경우 저임+단순+불안정 직종으로 내몰려 사실상 가족의 최종생계유지의 책임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이 사회 주류들은 이런 여성의 입장에 서서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그들은 남성이므로.

4. 노동자의 문제는 성별없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일치 단결해야 한다... 일면으로 맞는 얘기지만 일면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 또한 남성노동자의 시각에서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로서, 민노총은 정리해고 부분으로는 파업을 불사하지만 파견근로제로는 파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규직의 입장에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이미 비정규,임시직 및 파견직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사정이 합의해 통과시켜버린 파견직,비정규,임시직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왜? 바로 그런 직종으로 앞으로 더더욱 여성직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앞으로 여러분들과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지만, 노동고용구조의 성별분업을 가속화시킬 앞으로의 노동고용 구조를 예상하면서 현재도 불법적으로 많이 몰려있던 여성노동자의 입장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노동계 지도부의 입장이 포괄해내고 있지 못한 부분--이 부분이 바로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이후를 전망하는 것입니다--의 담론을 구성해낼 여성단위가 시급합니다!

5. 여성단체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성우선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조사만도 벅찬 것 같습니다. 가장 적나라한 현재의 여성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문제는 단지 부당해고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의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여성의 눈으로 재구성해낸 담론으로 널리 퍼뜨리는 단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단위...바로 대학 내 여성운동을 하는 우리들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 지금 대학가는 IMF시기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작해서 "실직한 아버지와 함께 아들'딸이 싸우자" 정도더군요. 여전히 대학생 스스로는 자신들을 수혜자 집단, 혹은 민중을 의식화 시켜낸다는 엘리트로 생각하는 관념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지... 혹은 자신들을 '일할 사람'으로 생각은 하지만, 좀 있음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하에 영어 공부만 열씨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치적 입장은 자신의 위치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바를 가지고 싸우는 입장에서 구성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요구합니다. 여대생의 입장에서 예비여성노동자로서, 실제 예비 실업자로서! 여기서 출발해야 관념적인 운동이 아닌, 실질적인 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7. 우리는 다시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됨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대학 내 여성운동은 학생운동에서 분리되기 위해서 기존의 학운영역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했고, 따라서 많은 운동이 sexuality로 집중되어왔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축소될 수 없는 우리의 운동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것의 억압력은 정확하게 우리쪽을 향해 일방향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노동권'생존권을 '그들'에게 넘기지 맙시다. 노동운동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문성이란 절박한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형성해 내는 것입니다. 여성의 노동문제에 대해서 학내 어떤 세력도 우리만큼의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신과, 각 학교의 여성대중들과, 이나라 전체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자신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의지를 모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 만약 6학교가 모였다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한 학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6학교의 입장에서 나오는 좀더 포괄적인 운동판이 상정될 것이며, 내용도 분담하면 6배로 구성될 것이며, 동일하게 6배의 지역으로 퍼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학단위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발벗고 뛰어다닐 현장은 '널려' 있습니다. 언제나 한명한명의 여성운동가는 절실한 상황이므로). 어짜피 그 누구도 자신의 위치에서 부분적 판단밖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울러 이 과제는 이땅 전체의 여성운동판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해야할 시급한 과제임을 저는 믿습니다.

9. 참고로, 대학내 여성운동가들의 모임은 연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기반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동지들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에 많은 여성들이 함께 하는 것... 이는 현 경제상황 극복을 위한 투쟁임과 동시에 이 자체가 여성운동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앞으로의 실천에 따라 구축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지금의 상황에 '분쇄'당하지 말고, 지금까지 앞으로 나왔던 것처럼 또 한보 전진합시다!!

이 움직임에 함께 동참하실 단위나 활동가는 5월 14일 목요일 이대 중강당에서 공청회 후에 곧바로 임시 모임을 통해 간단한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리 (12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제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동참/불참 모두).